

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18
----------	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1월 30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실체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드론 탑승자 대상의 안전교육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드론 탑승자 대상의 안전교육을 삭제함(안 제9조제3호).

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로 한다.

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드론”이란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.

안 제9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〈수정안 조문대비표〉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무인동력 비행장치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</u>를 도모하여 <u>서울특별시 경제의 발전</u>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<u>서울특별시의 경제발전</u>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<u>서울특별시의 경제발전</u>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”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·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기로써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의 비행장치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드론”이란 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드론”이란 「<u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.</p>
<p>제9조(안전교육) 시장은 <u>무인동력비행장치의 조정자 및 산업종사자</u></p>	<p>제9조(안전교육) 시장은 <u>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</u> 다음 각 호와</p>	<p>제9조(안전교육)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를 대상으로</u>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<u>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자</u>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</p> <p>2. <u>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</u>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3.</u>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</p>	<p>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<u>드론을 비행하는 자</u>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</p> <p>2. <u>드론산업 종사자</u>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</p> <p><u>3. 드론 탑승자 대상의 안전 교육</u></p> <p><u>4.</u>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</p>	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3.</u>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</p>

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”을 “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드론산업”으로, “서울특별시 경제의 발전”을 “서울특별시의 경제발전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드론”이란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.
2. “드론산업”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” 를 “드론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” 를 “드론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발전” 을 “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” 를 “드론의” 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)” 을 “(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추진계획” 을 “육성계획” 으로, 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” 를 “사항을 포함한다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진흥” 을 “드론산업 진흥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인력의” 를 “드론산업 인력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” 를 각각 “드론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” 을 “드론산업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진흥” 을 “드론산업 진흥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” 를 각각 “드론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를” 을 “드론을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” 을 “드론산업” 으로 한다.

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 이라 한다)

을 수립·시행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등)” 을 “(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” 을 “제5조에 따른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” 을 “드론산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무인동력비행장치” 를 “드론산업 종사자의 드론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” 를 “드론” 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무인동력비행장치 저변확대)” 를 “(드론의 저변확대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” 를 각각 “드론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의” 를 “드론에 관한” 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무인동력비행장치의 실증단지 조성)” 을 “(드론 실증단지 조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의” 를 “드론” 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의 조정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” 를 “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

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자” 를 “드론을 비행하는 자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” 를 “드론산업 종사자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관련정책” 을 “드론산업 관련 정책” 으로,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” 를 “드론산업에” 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포상)” 을 “(표창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연구, 산업발전” 을 “드론의 연구·개발 및 드론산업 발전” 으로, “포상” 을 “표창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무인동력비행장치”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·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기로써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 비행장치를 말한다. 2. “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”이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작·운용하기 위한 산업,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드론산업----- 서울특별시의 경제발전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드론”이란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. 2. “드론산업”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
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.

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③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5조(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드론-----

-----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
----- 드
론 -----

-----.

② -----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-----

-----.

③ ----- 드론의 -----

-----.

제5조(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----- 육성계획-----
-----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
2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
3. 무인동력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·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4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행사·기술개발·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
5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
6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
7.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
8.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
9.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(생략)

1. 드론산업 진흥-----

2. 드론산업 인력 -----

3. 드론 -----

4. 드론 -----

--
5. 드론산업-----

6. 드론산업 진흥-----

-
7. 드론 -----

--
8. 드론-----

9. 드론을 -----

10. ----- 드론산업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

및 지원 등)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을 국가기관, 정부출연 연구기관, 공공기관, 대학,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종사자의 무인동력비행장치 개발·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연구,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무인동력비행장치 저변확대)

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) ①

----- 제5조에 따른 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드론산업 -----

-----.

③ ----- 드론산업 종사자의 드론 -----

-----.

④ ----- 드론 -----

-----.

제7조(드론의 저변확대) ①

----- 드론 -----

-----.

1.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
2. 무인동력비행장치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
3. 그 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진대회, 교육,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,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,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무인동력비행장치의 실증단지 조성)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안전교육)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조정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
2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

1. 드론 -----

2. 드론-----

3. ----- 드론-----

② ----- 드론에 관한 -----

-----.

제8조(드론 실증단지 조성) -----
----- 드론 -----

-----.

제9조(안전교육) ----- 드론의 안전
운용을 위하여 -----

-----.

1. 드론을 비행하는 자 -----

2. 드론산업 종사자 -----

3. (생략)

제10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
· 시행을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포상)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구,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공무원·단체·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실태조사) ① ----- 드론산업
관련 정책-----
----- 드론산업에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표창) ----- 드론의 연구·
개발 및 드론산업 발전 -----

----- 표창-----.